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9. 12. 21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9년 12월 9일

○ 회부일자 : 1999년 12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1999. 12. 21)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 한 문 석)

가. 제안이유

○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명칭 및 사무관장 부서를 조정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 일부 사무를 시·군·출장소에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경 제 과>

○ 직업안정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등 8개 사무 삭제

<자원관리과>

- 전기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등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 석탄사업법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방법 변경
 - 석탄가공업의 등록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등 5개 사무

<보건위생과>

- 결핵예방법 등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축 산 과>

- 축산법, 가축전염예방법, 어선법 등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안전관리과>

-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신규 위임
 -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 조치 등 11개사무
-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총 무 과>

- 별표 4의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 임용권한중 일부사무 환수
 - 지방연구관·지도관의 전보권 위임대상에서 제외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 김 종 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99. 9. 7 개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직업안정법 등 10개 법안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의거 주민 편의 및 행정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부 사무를 시·군·출장소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부서 명칭 변경은

- 재정과를 “재무과”로, •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
- 보건과를 “보건위생과”로, • 재해대책과를 “안전관리과”로
- 교통정책과를 “교통도로과”로 변경하려는 것이고

권한 위임사무중 소관부서 이관은

- 사회복지과 소관의 아동의 후견인 선임, 해임 청구 등 4종을
여성정책관실로
- 환경위생과 소관의 토양 정밀 조사 등 6종을 환경과로
조리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등 5종을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하고
- 도로과 소관의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관련 사항등
5종을 교통도로과 소관으로 하려는 것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은

-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시·군 권한 위임사무이던 유료직업 소개 사업의 허가 등 8개 사무를 시·군 사무로 변경하고, 석탄사업법 개정으로 석탄가공업관련 업무가 시·도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시·군에 조례로 위임하려는 것이며,
- 전기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전염병예방법 및 동 법 시행령과 결핵예방법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동 법 시행령과 어선법,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중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 보수·시정 조치 등 11개 사무를 시·군·출장소로 신규 위임하고
-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 임용권한중 지방연구관, 지도관의 전보권을 타 직속기관·사업소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임 대상에서 제외 시키려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의 분야별란중 “재정과”를 “재무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 “보건과”를 “보건위생과”로, “재해대책과”를 “안전관리과”로, “교통정책과”를 “교통도로과”로 한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사회복지과 소관 제17호 내지 제20호”를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1호 내지 제4호”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호 내지 제6호”를 “환경과 소관 제26호 내지 제31호”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7호 내지 제11호”를 “보건위생과 소관 제49호 내지 제53호”로, “도로과 소관 제1호 내지 제5호”를 “교통도로과 소관 제14호 내지 제18호”로 한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경제과 소관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20호”를 “제3호 내지 제19호”로 한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자원관리과 소관 제1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원관리과	1	○전기사업자의 타인토지등 출입허가	전기사업법제56조제2항, 제5항
	2	○10만V미만으로서 전기수용설비 500KW미만 및 발전용량 200KW 미만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명령	전기사업법 제42조
	3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제조(변경)등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원관리과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허가 나.조정명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동법 제34조
	5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제4항
	6	○에너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 사용조치 나.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면제 다.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라.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 해임·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한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5항 동법 제58조 제6항 동법 제59조 제4항 동법 제100조
	7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수리·개조 ·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명령	전기사업법 제42조
	8	○전기사업자의 타인의 토지공간 사용허가	동법 제57조 제2항
	9	○전기사업자, 손실을 받은자의 재정 신청의 처리	동법 제58조 제2항
	10	○석탄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석탄가공업의 등록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나.석탄가공업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 다.석탄가공업의 휴·폐지신고에 관한 업무 라.석탄가공업의 영업정지에 관한 업무 마.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	석탄산업법 제17조 동법 제20조 제3항 동법 제22조 동법 제21조 제1항 동법 제45조 제3항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보건위생과 소관 제41호,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6호를 삭제하며, “제47호 내지 제49호”를 “제46호 내지 제48호”로 한다.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건위생과	41	○공사립의료기관을 제1종 전염병의 격리병사 또는 제3종 전염병의 진료소 대응 지정	전염병예방법 제25조
	45	○예방접종약품등의 용도변경등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4조의2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축산과 소관 제1호 내지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축 산 과	1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수의사법 제17조 제3항
	2	○동물병원의 휴업·폐업신고의 수리	동법 제18조
	3	○보고명령 및 검사등	동법 제31조
	4	○공수위에 대한 업무위촉 및 지도 감독	동법제21조제1항, 제2항
	5	○동물병원의 동물진료업 정지	수의사법 제33조
	6	○가축의 격리와 이동제한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
	7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동법 제15조
	8	○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9	○도축장외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수리	동법 제7조
	10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관리 약사 변경신고의 수리	약사법 제35조제2항,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10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축 산 과	11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관리 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에 관한 사무 (축산물 등의 수거검사 사무 제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
		나.영업의 허가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허가	동법 제22조
		다.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동법 제22조
		라.영업의 조건부 허가 및 조건이행 의 신고 수리	동법 제23조
		마.품목제조보고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의 처리	동법 제25조
		바.영업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동법 제26조
		사.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동법 제27조
		아.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동법 제28조
		자.시설개수명령	동법 제35조
		차.축산물의 압류·폐기 또는 회수 처분에 관한 사무	동법 제36조
	12	카.공표명령	동법 제37조
		타.영업소의 폐쇄 조치	동법 제38조
		파.청문에 관한 사무	동법 제43조
		하.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	동법 제47조
	13	○어선의 등록·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말소	어선법제13조,제17조, 제19조,동법시행령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제23조,제26조, 제27조,제28조,제29 조,제32조,제72조
	13	○어선건조,개조의 발주허가 및 취소,건조 개조등의 허가구분,허가 신청, 허가조건, 허가서등의 재교부	어선법 제8조,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5조,제7조,제11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축 산 과	14	○ 청문에 관한 권한	동법 제38조
	15	○ 내수면어업의 면허, 기간연장 허가 및 시설제거명령, 수면관리자와의 협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1조, 제31조
	16	○ 과태료 부과 · 징수, 이의신청 처리	어선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19조
	17	○ 수산시설 관리 감독자의 의무	수산시설관리규정 제5조
	18	○ 시설 유형별 관리감독 및 처분 승인권	동규정 제6조
	19	○ 처분의 제한	동규정 제7조
	20	○ 관리부의 비치	동규정 제9조
	21	○ 관리상황의 조사	동규정 제10조
	22	○ 시설의 활용 및 보조금의 반환등	동규정 제12조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안전관리과 소관 제1호 내지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안전관리과	1	○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이하 “지방하천”이라 한다)에서 허가·승인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 수리	하천법 제4조
	2	○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등 조치	동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8조
	3	○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작성한 하천부속물관리규정의 승인·변경승인	동법 제16조
	4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시장·군수·출장소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동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안전관리과	5	○비관리청 시행 하천 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하천공사 시행허가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다. 복합허가사항의 일괄 처리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예치 및 관리 마.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착수신고 수리 바. 인가내용 고시	하천법 제3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 제30조제2항 동법 제3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 제30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 동법 제30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 제30조제7항
	6	○비관리청 시행 지방하천공사 준공인가 또는 검사의뢰	동법 제31조
	7	○시장·군수·출장소장이 수립한 지방하천정비 시행계획 및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동법 제32조제2항
	8	○지방하천 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등 필요한 조치 가. 유수의 사용 나. 토지의 점용 다. 하천부속물의 점용 라. 공작물 신축·개축·변경(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하천공사는 제외) 마.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바.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사.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아. 식물의 재식 자. 선박의 운항(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동법제33조제1항제1호 동법제33조제1항제2호 동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동법 제33조제1항 제4호 동법 제33조제1항 제5호 동법 제33조제1항 제6호 동법 제33조제1항 제7호 동법 제33조제1항 제8호 동법 제33조제1항 제9호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안전관리과	9	○지방하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	동법제33조제2항 동법시행령제26조
	10	○지방하천내 공작물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용공사의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동법제33조제5항
	11	○지방하천의 점용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 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징구 요구	동법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12	○지방하천의 비관리청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및 통지	동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13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관리	동법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14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	동법 제69조
	15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처분(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	동법 제64조
	16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명령	동법 제65조
	17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시행·협의·통지· 준공고시	동법 제28조, 동법시행령제18조
	18	○지방하천의 하천예정지 또는 연안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 조치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다. 죽목의 식재	동법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제31조
	19	○지방하천 예정지 및 연안구역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동법 제40조제2항
	20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야영·낚시 행위 금지지역 지정 관리 및 공고	동법 제71조제4호, 동법시행령 제50조
	21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통지	동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안전관리과	22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 조사,통지	동법 제74조, 동법시행령제53조
	23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물건 등의 사용·수용	동법 제76조
	24	○하천감시원의 임명 등	동법 제68조
	25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감면	동법 제80조
	26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승인취소시 청문	동법 제81조
	27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88조
	28	○보상금액의 산정	법률제3782호하천 법중개정법률부칙 제2조의규정에의한 하천편입토지보상 에관한규정제9조
	29	○보상금 지급 통지	동규정 제11조
	30	○소유권 이전등기	동규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31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규정 제14조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총무과 다음에 여성정책관실, 재무과, 경제과, 자원관리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위생과, 물관리과, 농산지원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지역개발과, 안전관리과, 교통도로과 순으로 한다.

별표4의 권한위임사무의 총무과 소관 제2호 중 “지방연구관·지도관 전보권 및 호봉승급”을 “지방연구관·지도관의 호봉승급”으로 한다.

별표5의 민간위탁사무의 대상실과란중 “보건과”를 “보건위생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재정과	1-7	(생략)		재무과	1-7	(현행과 같음)	
경제과	1-2	(생략)		경제과	1-2	(현행과 같음)	
	3	○ 국내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등	직업안정법 동법제19조			(삭제)	
		나. 직업소개소의 지도 및 단속	동법시행규 칙 제29조			(삭제)	
		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지신고의 수리	동법제35조			(삭제)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취소등	동법제36조			(삭제)	
		마. 직업소개소 폐쇄등 조치	동법제37조			(삭제)	
		바. 직업소개사업종사자 에 대한 교육훈련	동법 제 40 조			(삭제)	
		사. 직업소개사업의 보고 및 검사	동법 제 41 조			(삭제)	
		아.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제49조			(삭제)	
	4-20	(생략)			3-19	(현행과 같음)	
자 원 관리과	1	(생략)		자 원 관리과	1	(현행과 같음)	
	2	○ 10만V미만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 안전관리규정변경명령				(삭제)	
	3	○ 10만v미만으로서 전기 수용설비 500KW미만 및 발전용량200KW미 만의 자가용 전기설비 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확인점검 나. 보고명령및 출입검사 다. 수리·개조·이전명령 사용정지·제한명령	전기사업법 동법제41조 제2항 동법제63조 동법제42조		2	○ 10만v미만으로서 전 기수용설비 500KW 미만 및 발전용량 200KW미만의 자가 용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개조·이전또 는 사용정지나 제한 명령	전기사업 법제42조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자원 관리과	4	○ 용기, 냉동기 또는 특정 설비제조(변경)허가	고압가스안 전관리법 제5조제1항	자 원 관 리 과	3	○ ----- -----등록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 제 5 조 제1항
	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에 관한 다음 가. 가스용품제조사업 (변경)허가 나. 시공자에 관한 시정명령등 다. 조정명령	액화석유가 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동법 제3조 동법 제15조 의4 동법 제34조		4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나. (현행과 같음)	
	6	○ 도시가스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도시가스사 업법 제54조 제4항		5	○ 특정가스사용시설 에 관한 과태료 부 과 징수	도시가스 사업법 제 54조 제4 항
	7	○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 나(생략) 다. 검사대상기기 조종 자의 선임기한연기 승인 및 필요한 조치명령 라.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 명령 마. 검사대상기기 조종 자의 선임·해임· 퇴직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법 제59조 제4항, 제5 항 동법 제61조 제1항, 제2 항 동 법 제100조		6	○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나(현행과 같음) 다. 검사대상기기 조 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삭 제) 라. 검사대상기기 조 종자의 선임·해 임·퇴직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한자의 과태료 부과징수	동 법 제59조 제4항 동 법 제100조
	8	○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확인점검 나. 전기설비의 수리, 개조이전명령, 사용 정지 및 사용제한 명령	전기사업법 동법 제41조 제3항 동법 제42조		7	○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수리 개조 이 전 또는 사용정지 나 제한명령	전 기 사업법 제42조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자원 관리과	9	○전기사업자의 타인의 토지공간 사용허가	동법제57조 제2항	자원 관리과	8	(현행과 같음)	
	10	○전기사업자, 손실을 받은자의 재정신청 의 처리 (신설)	동법제58조 제2항		9	(현행과 같음)	
					10	○석탄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석탄가공업의 동 록 변경신고에 관 한 업무 나. 석탄가공업의 지 위승계 신고에 관 한 업무 다. 석탄가공업의 동 류 폐지 신고에 관한 업무 라. 석탄가공업의 동 업정지에 관 한 업무 마. 과태료의 부과 징수 업무	석탄산업 법제17조 동법제20 조제3항 동 법 제22조 동법 제21조 제1항 동법제4 5조제3 항
사회 복지과	1-16	(생략)		사회 복지과 여성 정책 개발실	1-16	(현행과 같음)	
	17	○아동위원의 감독	아동복지법 제7조		1	(현행과 같음)	
	18	○친권상실의 신고청구	동법제15조		2	(현행과 같음)	
	19	○아동의 후견인 선 해임 청구	동법제16조		3	(현행과 같음)	
	20	○재단법인의 아동복지 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시설의 설치인가	동법제20조 제2항, 동법 시행령제11 조제1항		4	(현행과 같음)	
		나. 시설의 폐지·휴지 의 신고의 수리 다. 시설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변경신고의 수리	동법시행령 제11조제2 항 동법시행령 제11조제2 항				
환경 관리과	1-25	(생략)		환경과	1-25	(현행과 같음)	
환경 위생과	1-6	(생략)			26-31	(현행과 같음)	
	7-11	(생략)		보건 위생과	49-5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보건과	1-40	(생략)		<u>보건 위생과</u>	1-40	(현행과 같음)	
	41	○ 공. 사립의료기관을 제1종 전염병의 격 리병상 또는 진료소 대응 지정	전염병 예방법 제25조		41	○ 공. 사립의료기관을 <u>제1종 전염병의 격리병상 또는 제 3종 전염병의 진 료소 대응 지정</u>	전염병 예방법 제25조
	42-44	(생략)			42-44	(현행과 같음)	
	45	○ 예방접종 약품등의 폐기처분 (용도변경제외)	동 법 제4조의2		45	○ <u>예방접종약품등의 용도변경등</u> (삭제)	동법시행 령 제4조 의2
	46	○ 사립의 결핵진료소, 요 양소의 설치, 설치허가 중의 교부 및 설치 허가사항의 변경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 규칙제14조, 제16조				
축산과	47-49	(생략)		축산과	46-48	(현행과 같음) (삭제)	
	1	○ 부화업, 종축업, 축산 업의 등록	축산법제26 조, 제27조, 동법시행규 칙제14조, 제25조, 제2 8조제1항			(삭제)	
	2	○ 부화업, 종축업, 축산 업의 등록 취소, 부화업의 영업정지	동법제31조 제1항, 제2 항, 동법시행 령 제16조, 동법시행규 칙제30조			(삭제)	
	3	○ 부화업, 종축업 또는 축산업 등의 감독	동 법 제32조			(삭제)	
	4	○ 부화업, 종축업의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변경 신고 수리	동법제26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3 항, 제25조 제4항			(삭제)	
	5	○ 축산업 등록의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 사항 변경신고 수리	동법 제27 조 제5항, 제6항, 동 법시행규칙 제28조제6 항, 제7항			(삭제)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축산과	6	○영업의 승계신고	동법시행규 칙제29조	축산과		(삭제)	
	7	○초과사육가축감축명 령, 초과사육부과금부 과·징수	동법제30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삭제)	
	8	(생략)			1	(현행과 같음)	
	9	○소독등의 실시· 명령·기록·확인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조			(삭제)	
	10-14	(생략)			2-6	(현행과 같음)	
	15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8조			(삭제)	
	16	○살처분 명령, 살처분 및 기타 필요한 조치	동법 제10조			(삭제)	
	17	(생략)			7	(현행과 같음)	
	18	○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8	○검사, 주사, 약물, 목 욕 또는 투약의 실 시명령등	가축전염 병예방법 제5조
	19	○축사등의 소독명령	동법 제16조			(삭제)	
	20-23	(생략)			9-12	(현행과 같음)	
	24	○어선전조, 개조의 발주 허가 및 취소, 발주허 가내용통보, 전조 개 조의 중지 및 어선, 어선설비 제거명령	어선법 제8 조, 제9조, 제 10조, 동법 시행규칙 제 4조, 제5조 제7조, 제8 조, 제11조		13	○어선전조, 개조의 발 주허가 및 취소, 전 조개조등의 허가구 분, 허가신청, 허가 조건, 허가서등의 재교부	어선법 제 8조, 제1 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 5조, 제7 조, 제11 조
	25	○어선현장 확인 업무	어선법 제11조			(삭제)	
	26	○청문에 관한 권한	동법제38조 동법시행령 제17조		14	○(현행과 같음)	동법 제38조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축산과	27	○ 내수면어업의 면허, 기간연장 허가 및 시설제거명령, 수면 관리자와의 협의	내수면어업 개발촉진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1조, 제27조, 제31조	축산과	15	○ (현행과 같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1조, 제31조
	28	○ 방치어선관리, 처분과 내용공고, 제거명령 및 필요조치(대집행)	어선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5조			(삭제)	
	29-34	(생략)			16-21	(현행과 같음)	
	35	○ 관리조치 및 보고	수산물관리법 제11조			(삭제)	
	36	(생략)			22	(현행과 같음)	
재해 대책과	1	○ 지방·준용하천에 있어서 하천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양도 양수의 허가 및 신고 수리	하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안전 관리과	1	○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이하 "지방하천"이라 한다)에서 허가·승인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 수리	하천법 제4조
	2	○ 지방·준용하천에 있어서 권리의무의 상속 신고수리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삭제)	
	3	○ 발기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삭제)	
	4	○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승계 신고의 수리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신 설)			2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 시정 등 조치	동법 제1 5조, 동 법시행령 제8조
		(신 설)			3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 청" 이라 한다)가 작성 한 하천부속물관리규 정의 승인·변경승인	동법 제16조
	5	○지방.준용하천의 타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 및 유지명령	동법 제18조			(삭 제)	
	6	○지방.준용하천 공작물 의 효용을 겸하는 타 공작물의 공사 및 유 지	동법 제19조			(삭 제)	
	7	○지방.준용하천에 있어 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동법 제20조			(삭 제)	
	8	○지방.준용하천과 이해 관계가 있는 공공단 체등에 대한 공사 및 유지명령	동법 제22조			(삭 제)	
		(신 설)			4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정비시행계획 의 수립 및 고시(시장· 군수·출장소장이 시행 하는 사업에 한한다)	동법 제27조, 동법시 행령 제17조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분야 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9	○지방.준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및 유지허가	동법 제23 조, 동법시 행령 제15 조 제1항		5	○비관리청 시행 하천공 사 및 유지·관리에 관 한 다음의 사항 가. 하천공사 시행허가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의 협의 다. 복합허가사항의 일괄 처리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예치 및 관리 마. 실시계획인가·변경 인가 및 착수신고수리 바. 인가내용 고시	동법 제30 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 제30 조제2항 동법 제30 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 제30 조제5항, 동 법시행령 제22조 동법 제30 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 제30 조제7항
	10	○지방.준용하천 공사의 착수신고 수리 및 준 공검사 (신 설)	동법시행 령 제15조 제3항		6	○비관리청 시행 지방하 천공사 준공인가 또는 검사의뢰	동법 제31 조
					7	○시장·군수·출장소장이 수립한 지방하천정비 시행계획 및 비관리청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 협의	동 법 제32조 제2항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분야 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재해 대책과	11	○ 지방·준용하천구역안 에서의 다음 각호의 허가에 관한 사항		안전 관리과	8	○ 지방하천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등 필요한 조치	
		가. 유수의 점용	하천법 제25조제 1항제1호			가. 유수의 사용	동법제33 조제1항 제1호
		나. 토지의 점용	동법제25 조제1항 제2호			나. (현행과 같음)	동법제33 조제1항 제2호
		다. 하천부속물의 점용	동법제25 조제1항 제3호			다. (현행과 같음)	동법제33 조제1항 제3호
		라. 공작물의 신축, 개축·변경 또는 제거	동법제25 조제1항 제4호			라. 공작물의 신축·개축 ·변경(다만, 법제30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하천공사는 제외한다)	동법제33 조제1항 제4호
		마. 토지의 굴착·성토,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동법제25 조제1항 제5호			마. 토지의 굴착·성토·절 토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동법제33 조제1항 제5호
		바. 토석·사력 기타 하천산출물 채취	동법제25 조제1항제 6호			바. 토석·모래·자갈 기 타 하천산출물의 채 취	동법제33 조제1항제 6호
		사. 스케이트장·유선장 의 설치 기타 하천의 점용	동법제25 조제1항 제7호			사. 스케이트장·유선장 의 설치	동법제33 조제1항 제7호
		아. 식물의 재식	하천법 제 25조제1 항제8호			아. (현행과 같음)	동법제33 조제1항 제8호
		자. 하수를 이용하는 죽목의 유송 또는 선박의 운항(2개 시군이상 관련사 항 제외)	동법제25 조제1항 제9호			자. 선박의 운항(2이상 의 시군 관련 사항 제외)	동법제33 조제1항 제9호
		차. 하천의 현저한 오손 또는 위생상 유해한 행위	동법제25 조제1항 제10호			(삭제)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분야 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재해 대책과	12	○지방.준용하천의 인접 지역에서 수량에 영 향을 미칠 지하의 유 수채취허가	동법제25 조제2항	안전 관리과		(삭제)	
	13	○지방.준용하천의 점용 허가 내용 등의 고시	동법제25 조제4항		9	○지방하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	동법 제33 조제2항, 동법시행 령 제26조
	14	○지방.준용하천에서 유 수점용 수리권 조정	동법제29 조			(삭제)	
	15	○지방.준용하천에서 공 작물의 신축,개축공사 의 준공검사	동법제31 조제1항		10	○지방하천내 공작물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 용공사의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동법 제33 조제5항
		(신설)			11	○지방하천의 점용등 허 가신청자에 대한 기록 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징구 요구	동법 제34 조, 동법시 행령 제27 조
	16	○지방.준용하천공사 준 공검사전 사용승인	동법제31 조제2항			(삭제)	
	17	○지방.준용하천에서 점 용하천에 관한 공사 의 대행	동법제32 조		12	○지방하천의 비관리청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및 통지	동법 제36 조, 동법시 행령 제29 조
	18	○지방.준용하천에서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동법제35 조		13	○지방하천 점·사용허가 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 공 작물등의 국유화 및 원 상회복비용의 예치관리	동법 제73 조, 동법시 행령 제52 조
	19	○지방.준용하천에서 필 요한 보고의 징구 및 검사	동법제72 조제1항		14	○지방하천의 점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	동법 제69 조
	20	○지방.준용하천에서 법 령위반자에 대한 처 분 및 의견청취(단, 허가 위임된 사항에 한함)	동법제67 조		15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 반 자에 대한 조치명령 · 처분(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	동법 제64 조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재 해 대책과	21	○ 지방.준용하천에서 공 익을 위한 처분 등	동법 제68 조제1항	안 전 관리과	16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 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명령	동 법 제65조
	22	○ 지방.준용하천의 유지 및 직할하천의 경미 한 보수	동법 제16 조.제22조		17	○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 작물 등의 하천공사 시 행·협의·통지·준공 고시	동법제28 조. 동법시행 령 제18 조
	23	○ 지방.준용하천의 공사 로 인하여 현저한 이 익을 받은 자에 대한 공사비용의 부과.징수	동법 제58 조			(삭 제)	
	24	○ 공유수면 점용 및 허 가 기간연장 신청의 처리	공유수면관 리법시행령 제14 조			(삭 제)	
	25	○ 공유수면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에 관한 사항				(삭 제)	
		가.공작물의 신축 등	동법제4조 제1항제1호			(삭 제)	
		나.점속토지의 수면 이하로의 굴착	동법 제4조 제1항제2호			(삭 제)	
		다.준설.굴착	동법제4조 제1항제3호			(삭 제)	
		라.인수.주수	동법제4조 제1항제4호			(삭 제)	
		마.토석.사력채취.식물 재배.벌채	동법제4조 제1항제5호			(삭 제)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재해 대책과		바.수질오손 및 국민 보건 유해행위	동법제4조 제1항제6 호	<u>안전 관리과</u>		(삭 제)	
		사.토석.진개등의 투기 등	동법제4조 제1항제7 호			(삭 제)	
		아.호안 등 시설물 및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	동법제4조 제1항제8 호,제9호			(삭 제)	
	26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내용 고시	동법시행 령 제4조			(삭 제)	
	27	○공유수면 점용 권리 의무의 이전허가	동법시행 령 제5조			(삭 제)	
	28	○공유수면 점용 권리 의무 상속신고 수리	동법시행 령 제6조			(삭 제)	
	29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 명령	동법제10 조			(삭 제)	
	30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승인	동법 제11 조제1항			(삭 제)	
	31	○공유수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및 그내용 등의 공고 등	동법제12 조			(삭 제)	
	32	○공유수면에서 공익을 위한 허가의 취소 등	동법 제13 조			(삭 제)	
	33	○공유수면에서 법령위 반자에 대한 처분	동법 제15 조			(삭 제)	
	34	○공유수면 점용자에 대한 조사 등	공유수면 관리법 제 16조			(삭 제)	
	35	○공유수면에 대한 처 분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	동법 제14 조			(삭 제)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분야 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재해 대책과	36	○ 하천편입 사유토지 등기말소 및 국으로 의 등기	하천법시 행령 제11 조의2	안전 관리과		(삭제)	
	37	○ 지방.준용하천내 공사 실시계획 및 준공인 가	하천법 제 30조의2			(삭제)	
	38	○ 지방.준용하천 연안구 역내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45 조		18	○ 지방하천의 하천예정지 또는 연안구역에서 다 유.각호의 허가 및 처 분등 조치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 나. 토지의 굴착·성토· 절토·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다. 죽목의 식재	동법 제40 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1조
	39	○ 지방.준용하천 연안구 역내 장애.위험방지 시설설치 및 기타 조치 명령 (신설)	동법 제46 조제2항		19	○ 지방하천 예정지 및 연안구역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및고시	동법 제40 조제2항
		(신설)			20	○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야영·낙시행위 금지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	동법 제71 조제4호, 동법시행령 제50조
	40	○ 하천 편입용지등의 보상	동법 제74 조		21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 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통지	동법 제72 조, 동법시 행령 제51 조
	41	○ 지방.준용하천에서 실효된 하천에 관한 효력회복의 조치 (신설)	동법 제70 조		22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 실보상 및 협의. 조사 통지 (삭제)	동법 제74 조, 동법시 행령 제53 조
					23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물건 등의 사용·수용	동법 제76 조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재해 대책과	42	○ 하천감시원의 임명등 (신 설) (신 설) (신 설)	동법 제71 조제1항	<u>안 전</u> <u>관리과</u>	24	(현행과 같음)	동법 제68 조
					25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감면	동법 제80 조
					26	○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 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승인취소시 청문	동법 제81 조
					27	○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88 조
	43	○ 보상금액의 산정	법률제378 2호하천법 중개정법 률부칙제2 조의규정 에의한하 천편입토 지보상에 관한규정 제9조		28	(현행과 같음)	
	44	○ 보상금 지급 통지	동규정 제 11조		29	(현행과 같음)	
	45	○ 소유권 이전등기	동규정 제 13조제2항 및 제3항		30	(현행과 같음)	
	46	○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규정 제 14조		31	(현행과 같음)	
도로과	1-5	(생략)		<u>교 통</u> <u>도로과</u>	14-18	(현행과 같음)	
교 통 정책과	1-13	(생략)		<u>교 통</u> <u>도로과</u>	1-13	(현행과 같음)	

(별표4)

권한 위임 사무

현행					개정안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사무명	위임대상 기관	근거 법령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사무명	위임대상 기관	근거 법령
총무과	1	(생략)	농업기술 원장	지방공무원 법제6조 제2항	총무과	1	(현행과같음)	농업기술 원장	지방공 무원법 제6조 제2항
	2	○지방연구관. 지도관 전보 권 및 호봉 승급				2	○지방연구관 ·지도관 ·호봉승급		
		○지방연구사. 지도사 전보 권 및 호봉 승급					○----- ----- ----- --		
	3-7	(생략)				3-7	(현행과같음)		

(별표5)

민간 위탁 사무

현행					개정안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위탁대상 사무명	위탁대상 기관	근거및 적용법규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위탁대상 사무명	위탁대상 기관	근거및 적용법규
1-7 (생략)					1-7 (현행과같음)				
보건과	8	(생략)			보건의 위생과	8	(현행과같음)		
9-10 (생략)					9-10 (현행과같음)				

근거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
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 제 과〉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⑨ (생략)

〈자원관리과〉

【전기사업법】

제41조 삭제 <'99. 2. 8>

제44조 삭제 <'99. 2. 8>

제63조 삭제 <'99. 2.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등)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4 삭제 <'99. 2. 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①-③(생략)

④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정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을 연기할수 있다.

⑤ 삭제 <'99. 1. 29>

제61조 삭제 <'99. 1. 29>

【석탄산업법】

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등) ①석탄가공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0조(계승) ①-② (생략)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계승한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계승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의 취소등) ①시·도지사는 석탄가공업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이하생략)

②-⑥ (생략)

제45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처분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④-⑥ (생략)

〈보건위생과〉

【전염병예방법】

제25조(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용) 시·도지사는 공·사립 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1종전염병의 격리병사 또는 제3종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용할 수 있다.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4조의2(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등) 국립보건원장·국립검역소장·시·도지사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예방접종약과 기타 전염병치료용으로 사용될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하생략)

【결핵예방법】

제30조 삭제 <’99. 2. 8>

〈축 산 과〉

【축산법】

제20조(부화업 및 종축업의 신고) ①부화업 또는 농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종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검사·주사·약물목록 또는 투약의 실시등)

제6조 (소독등의 실시)

제10조(살처분명령)

제16조(축사등의 소독)

제18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등)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4조의2(권한의 위임) ① (생 략)

②도지사는 법 제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등의 실시명령
2.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명령, 축견의 억류 또는 살 처분등의 조치
3.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사등의 소독명령
4. (생 략)

【어선법】

제11조 삭제 <'99. 2. 8>

제35조 삭제 <'99. 2. 8>

<안전관리과>

【하천법】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생략)

②하천은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국가하천 : 국토보존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 2.지방1급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하천
- 3.지방2급하천 :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기되는 수류로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준하여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12조 (관리청) ①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②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은 당해 관할구역의 시·도지
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15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등)

제16조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제27조 (하천정비시행계획)

- 제28조 (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 제30조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 제31조 (준공인가)
- 제32조 (다른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등)
- 제34조 (하천점용의 허가 요건)
- 제36조 (점용공사의 대행)
- 제40조 (하천예정지등에서의 행위허가)
- 제64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등)
- 제65조 (공익을 위한 처분등)
- 제68조 (하천의 감시)
- 제69조 (보고 및 출입등)
- 제71조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 제72조 (하천의 사용금지등)
- 제73조 (원상회복 의무)
- 제74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제76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 제80조 (허가수수료)
- 제81조 (청문)
- 제88조 (과태료)